EAID-CG

수 신: 하기 배부처 참조

제 목: 지휘 지침서 #10: 준비태세, 외출 및 휴가 지침

1. 참 조:
	1. 주한미군 규정 600-8-10, 외출 및 휴가, 2020년 6월 3일.
	2.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침 0536.2, 인도태평양사령부 대테러리즘 프로그램.
	3. 주한미군 대한민국 연휴 일정 회계년도 2025년 (v1)
2. 정 책. 육군 정책은 장병들의 건강, 사기,복지를 위해 연차 및 휴가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 연차 사용은 모든 장병의 권리임. 지휘관과 감독관은 부대 준비태세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장병이 쉴 수 있도록 부대 연차 및 외출 계획을 사전에 세울 것. 하지만, 임무 준비태세는 최우선임을 인지하여야 함.
3. 목 적. 본 정책은 미2사단/연합사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준비태세, 책무, 연가 및 외출 관련 정책임.
4. 준비태세 최소인원 점호 기준
	1. 각 부대 지휘관은 작전계획에 부합하는 준비태세 최소인원 정책 및 절차를 설립 할 것. 부대 병력 대비 최소인원 비율 수준 또는 기준은 따로 정해진 바 없음.
	2. 각 부대의 지휘관 혹은 부지휘관(보좌관 혹은 부사령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한반도 내에 위치해야 함.
	3. 이는 참모진도 동일 적용 사항임. 주참모 혹은 부참모 중 한 명은 반드시 위치해야함. 부대의 모든 필수 직책 관련 범위 내에서는 업무 상 제한사항이나 결여가 허용될 수 없음. 사단 주 및 부참모는 미2사단/연합사단 참모장에게 사전통보 후 휴가 및 외출을 사용할 것.
5. 휴가 및 외출
	1. 주둔지 국외 휴가 및 외출 승인 권한은 중령급 이상 직속상관에게 있음. 권한은 필요시 대위급 선임 지휘관에게 위임 가능함. 국외 출타 인원들은 여행지역 관련 정보, 정보처 보안교육, 그리고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침 0653.2에 부합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 수준에 따른 대테러 계획 지침 교육 및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음. 한반도 국내 및 국외 휴가 및 외출은 각각 별개 절차를 밟아야 함.
	2. 주둔국 국내 출타 관련해 (제주도는 국내로 포함) 승인권자는 아래와 같음:
		1. 선임 대위급 이상 지휘관 및 직속 상관.
		2. 사단 참모 중령급 이상 부서장 혹은 부부서장. 각 해당 부대의 중대본부의 책임을 부여하여 이에 부합하는 휴가 승인 처리 절차가 이루어 질 것임.
	3. 한반도 전구작전 지원 순환 부대 지휘관의 경우 일반적인 국외 휴가 및 외출 승인에 대한 권한이 금지됨. 긴급 휴가, 비상 조건에 따른 휴가, 그리고 육아 휴가에 관련해서는 해당 순환 부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에게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4. 외출 외박 제한 구역으로의 외박. 소속 부대 위치 반경 75마일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외박을 원하는 인원은 별개 신청을 할 수 있음.
6. 본 지침서는 모든 전의 사단 외출, 휴가, 준비태세 관련 지침을 대체함.
7. 본 지침서의 담당관은 야니아 아리자 중령이며, 담당부서는 미2사단 인사처임. 연락처는 DSN yania.ariza.mil@army.mil 또는 (315)756-7230 임.

 CHARLES LOMBARDO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배부처:

(다음 장 참조)

배부처:

2전투항공여단장

2지속지원여단장

210포병여단장

본부대대장

순환여단장

사단포병여단장